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도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36
----------	------

발의연월일 : 2024. 8. 16.

발의의원 : 서도원 의원,

양은숙 의원, 이연숙 의원

1.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위탁계약 해지 시 수탁자의 손실보상 제한 사유를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취소 및 해지에 따른 보상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자고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계약 해지조건 변경(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를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위탁운영) ① ~ ④ (생 략)	제15조(위탁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u>이로 인하</u> <u>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u> <u>하지 아니한다.</u>	⑤ ----- ----- -----, <u>수탁자의 귀책사유</u> <u>로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로</u> <u>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u> <u>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u>
1·2·3·4 (생 략)	1·2·3·4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2024.1.9. 타법개정, 2024.7.10. 시행)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7.2 타법개정, 2024.7.10. 시행)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옮겨심기에 필요한 경비
3. 사용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옮겨 심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계산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평가법인등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